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 26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물위반(상습폭행),사기,상해,명예훼손,협박,모욕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판 결

사건 2014고단2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 사기, 상해, 명예훼손, 협

박,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소현(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 및 F, G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0. 6.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잦은 다툼과 소란으로 수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474)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아파트 119동 옆 커피 자판기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개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남는 휴대폰이 1대 있는데, 밀린 요금만 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으로 명의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린 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요금 명목으로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K(5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28. 08:4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아파트 117 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115동 대표인 피해자 L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5동 동대표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대표를 하냐, 동대표에서 물 리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외치고, 위 아파트 상가 외벽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벽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L, M, F, G, N, K, C, J, D, O,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F의 고소장
- 1. 피의자가 피켓을 들고 피해자 L를 비방하는 모습 사진, 피의자가 119동 상가에 붙인 피해자 L 비방 글 사진 모습
- 1. 피해자 M. L의 각 상처 사진
-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료기록 첨부), 의무기록 사본
-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향 수사),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2022-10-06

-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C이 21만 원 중 10만 원이라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돈을 왜 주냐, 법원에 소송을 해서 10만 원보다 더 많이 내게 할 거다, 법원에서 보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내가 그 돈을 안 갚냐, 개년아, 그만 이야기해라, 더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3)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이 붙여 놓은 벽보를 떼어낸 것을 오해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 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 (1)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I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이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G, N 등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돈 받고 몸 팔아서 돈 버는 년이 뭔 돈을 갚으라고 하냐, 나한테 몇 십만 원을 빌려가서 못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300원 만도 못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냐, 이 개보지 같은 년아, 하수도 구멍보다 못한 년, 더러운 년아, 창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피고인은 2014. 9. 27. 14:00경 위 I 아파트 부근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N, Q 등 위 아파트 주민 10 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개보지 같은 년, 에이즈 걸린 보지 안 먹는다, 씹할 년, 보지 팔아서 먹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3) 피고인은 2014. 9. 28. 13:00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N, Q등위아 파트 주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에이즈 걸린 년, 보지 안 먹는다, 개보지, 창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협박의 피해자 C, D, E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모욕의 피해자 G가 2014. 11. 21.. 피해자 F이 2014. 11. 25.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판사 김규동